

의안번호	2213034
의 퇴 인	한민수의원
회 답 일	2025. 11. 17.
추 계 번 호	25B5097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진흥에 관한 특별법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제정안에 따라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6억원(연평균 1억 2,000만원)으로 추계됨
 -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결과로, 제정안의 전체적인 추가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표 1]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 계	연평균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기본계획 수립 (안 제5조)	300	—	—	300	—	600	120

주: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재정소요를 추계한 것으로, 실제 기본계획의 수립주기,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 방법 및 금액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증감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Ⅱ.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3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의무규정
2	안 제5조(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기본계획의 수립)	국가는 인공지능기술 및 인공지능산업의 진흥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신속한 구축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확충 및 이용 활성화 등 진흥과 기반 조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제2항)	의무규정
3	안 제6조(실태조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진흥과 기반 조성 등에 필요한 정책의 수립·추진을 위하여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관련 현황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4	안 제7조(통계의 작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거쳐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여 관리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5	안 제8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진흥과 기반 조성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6	안 제9조(복합 인허가 등의 일괄처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일괄처리 신청·접수 절차 등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창구 일원화, 정보시스템 구축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7	안 제11조(인공지능 데이터센터에 대한 지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신속하고 원활한 구축·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음 1. 전력 및 용수의 안정적 공급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2. 도로의 건설 3. 초고속 정보통신 설비 등 통신시설의 설치 4. 그래픽 처리 장치, 신경망 처리 장치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장비의 사업화를 위한 구입 지원 또는 제공·임대 5. 그 밖에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신속하고 원활한 구축·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재량규정
8	안 제12조(전문인력 양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 우수 인력의 채용 확대 및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음(제1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관련 교육 훈련을 실시하는 교육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을 지정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9	안 제13조(부대시설 설치 등 지원)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구축·운영과 관련한 시설 및 부지에 숙소, 편의시설, 보육시설, 복지시설 등 각종 부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사업자에게 설치·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음	재량규정
10	안 제14조(금융 지원)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사업자등에게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투자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재량규정
11	안 제15조(보조금 지급)	정부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사업자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음(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 구역 안에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를 구축·운영하거나 하려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사업자등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2	안 제16조(국제협력 과 해외진출의 촉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에 관한 국제협력과 관련 기술 및 서비스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1. 정보·기술·인력의 국제교류 2. 전시회 등 홍보와 해외 마케팅 3. 국가 간 공동 연구·개발 4. 해외진출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5. 국제협력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국가 간 공조 6. 그 밖에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관련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재량규정
13	안 제17조(지역사회 와의 협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조속한 구축 또는 확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를 구축 또는 확장하려는 자와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 주민과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14	안 제19조(세제에 관 한 특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진흥과 기반 조성 등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조세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감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재량규정
15	안 제25조(권한의 위 임 및 업무의 위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관련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3조(국가의 책무)	—	• 미대상 —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국가의 일반적인 책무를 선언적으로 규정						
2	안 제5조(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기본계획의 수립)	○	• 유사사례 참고						
3	안 제6조(실태조사)	×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현재 인공지능데이터센터를 포함한 데이터센터 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 중으로, 제정안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으로 사업 규모 등이 확대될 수 있으나, 현 시점에서는 사업 확대 여부 및 규모 등을 알 수 없어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움 (단위: 백만원) <table><tr><th>사업명</th><th>사업개요</th><th>2025</th></tr><tr><td>클라우드컴퓨팅 산업육성 (친환경 그린 등 데이터센터 산업 활성화)</td><td> • 데이터센터 산업 실태조사 — 국내 데이터센터 운영 등 실태조사 </td><td>150</td></tr></table>	사업명	사업개요	2025	클라우드컴퓨팅 산업육성 (친환경 그린 등 데이터센터 산업 활성화)	• 데이터센터 산업 실태조사 — 국내 데이터센터 운영 등 실태조사	150
	사업명			사업개요	2025				
클라우드컴퓨팅 산업육성 (친환경 그린 등 데이터센터 산업 활성화)	• 데이터센터 산업 실태조사 — 국내 데이터센터 운영 등 실태조사	150							
	안 제7조(통계의 작성)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4	안 제8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제정안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진흥과 기반 조성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필요한 경비를 출연·보조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 시점에서는 지정되는 전담기관의 수, 위탁 업무의 내용, 전담기관에 대한 출연·보조 규모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소요 비용 추계에 한계가 있음
5	안 제9조(복합 인허가등의 일괄처리)	×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제정안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일괄처리 신청·접수 절차 등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정보시스템 구축 등에 필요한 조치를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 시점에서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방식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지 않아 소요 비용 추계에 한계가 있음
6	안 제11조(인공지능 데이터센터에 대한 지원)	×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제정안에 따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신속하고 원활한 구축·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 시점에서는 사업의 내용 및 규모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지 않아 소요 비용 추계에 한계가 있음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7	안 제12조(전문인력 양성)	×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제정안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전문인력의 양성, 우수 인력의 채용 확대 및 해외 진출 지원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관련 교육훈련 실시 교육기관에 대한 경비 지원을 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 시점에서는 관련 정책의 내용 및 규모, 교육기관의 수, 교육기관에 대한 경비 지원의 규모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지 않아 소요 비용 추계에 한계가 있음 － 참고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 인재 육성 등을 위한 다음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단위: 백만원) <table><tr><th>사업명</th><th>사업개요</th><th>2025</th></tr><tr><td>정보통신방송 혁신인재양성(교육훈련) (인공지능 핵심인재양성)</td><td>인공지능 핵심기술에 대한 R&D 지원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석·박사급 인공지능 선도 연구자 집중 양성－ AI 특화교육과정 운영, 산학협력 강화, 대학원 교류 확대 등</td><td>30,000</td></tr><tr><td>인공지능융합 혁신인재양성</td><td>산학 공동 AI융합프로젝트를 통해 산업계 현안 해결 및 기업이 직접 교육과정에 참여하여 실전형 고급 인재 양성</td><td>13,500</td></tr><tr><td>지역디지털 인재양성(ICT이노베이션스퀘어조성)</td><td>전국 5개 권역의 ICT이노베이션스퀘어를 통해 AI·블록체인 등 디지털 신기술 분야 교육·개발·테스트·사업화 지원을 통한 실무형 SW·AI 전문인력 양성</td><td>31,382</td></tr><tr><td>생성AI선도 인재양성</td><td>대학과 생성AI 기관의 공동연구 및 우수연구자 파견 심층연구 지원을 통해 생성AI 초격차 기술 확보 및 생성AI 전문 인재 양성</td><td>8,700</td></tr><tr><td>AI스타 펠로우십 지원</td><td>AI 융합 산학협력 연구 기반 창의·도전적 연구지원을 통해 미래 AI 시장의 혁신을 이끄는 최고 수준의 AI 인재 양성</td><td>9,000</td></tr><tr><td>디지털전문·융합인재양성(이노베이션아카데미)</td><td>지속적인 혁신 성장을 위해 국내외 잠재력 있는 인재(AI 관련 인재 포함)를 대상으로 혁신적인 교육시스템을 지원하여 창의·혁신적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td><td>10,059</td></tr><tr><td>디지털전문·융합인재양성(산업재직자 AI역량강화)</td><td>기존산업과 AI융합을 통해 디지털 혁신을 선도할 수 있도록 재직자 AI 역량 강화, 기업의 디지털 전환 추진을 위한 맞춤형 교육·컨설팅 지원 및 디지털 전환 전문가 양성 등</td><td>6,780</td></tr></tabl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업명	사업개요	2025	정보통신방송 혁신인재양성(교육훈련) (인공지능 핵심인재양성)	인공지능 핵심기술에 대한 R&D 지원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석·박사급 인공지능 선도 연구자 집중 양성－ AI 특화교육과정 운영, 산학협력 강화, 대학원 교류 확대 등	30,000	인공지능융합 혁신인재양성	산학 공동 AI융합프로젝트를 통해 산업계 현안 해결 및 기업이 직접 교육과정에 참여하여 실전형 고급 인재 양성	13,500	지역디지털 인재양성(ICT이노베이션스퀘어조성)	전국 5개 권역의 ICT이노베이션스퀘어를 통해 AI·블록체인 등 디지털 신기술 분야 교육·개발·테스트·사업화 지원을 통한 실무형 SW·AI 전문인력 양성	31,382	생성AI선도 인재양성	대학과 생성AI 기관의 공동연구 및 우수연구자 파견 심층연구 지원을 통해 생성AI 초격차 기술 확보 및 생성AI 전문 인재 양성	8,700	AI스타 펠로우십 지원	AI 융합 산학협력 연구 기반 창의·도전적 연구지원을 통해 미래 AI 시장의 혁신을 이끄는 최고 수준의 AI 인재 양성	9,000	디지털전문·융합인재양성(이노베이션아카데미)	지속적인 혁신 성장을 위해 국내외 잠재력 있는 인재(AI 관련 인재 포함)를 대상으로 혁신적인 교육시스템을 지원하여 창의·혁신적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	10,059	디지털전문·융합인재양성(산업재직자 AI역량강화)	기존산업과 AI융합을 통해 디지털 혁신을 선도할 수 있도록 재직자 AI 역량 강화, 기업의 디지털 전환 추진을 위한 맞춤형 교육·컨설팅 지원 및 디지털 전환 전문가 양성 등	6,780
			사업명	사업개요	2025																						
			정보통신방송 혁신인재양성(교육훈련) (인공지능 핵심인재양성)	인공지능 핵심기술에 대한 R&D 지원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석·박사급 인공지능 선도 연구자 집중 양성－ AI 특화교육과정 운영, 산학협력 강화, 대학원 교류 확대 등	30,000																						
			인공지능융합 혁신인재양성	산학 공동 AI융합프로젝트를 통해 산업계 현안 해결 및 기업이 직접 교육과정에 참여하여 실전형 고급 인재 양성	13,500																						
			지역디지털 인재양성(ICT이노베이션스퀘어조성)	전국 5개 권역의 ICT이노베이션스퀘어를 통해 AI·블록체인 등 디지털 신기술 분야 교육·개발·테스트·사업화 지원을 통한 실무형 SW·AI 전문인력 양성	31,382																						
			생성AI선도 인재양성	대학과 생성AI 기관의 공동연구 및 우수연구자 파견 심층연구 지원을 통해 생성AI 초격차 기술 확보 및 생성AI 전문 인재 양성	8,700																						
			AI스타 펠로우십 지원	AI 융합 산학협력 연구 기반 창의·도전적 연구지원을 통해 미래 AI 시장의 혁신을 이끄는 최고 수준의 AI 인재 양성	9,000																						
			디지털전문·융합인재양성(이노베이션아카데미)	지속적인 혁신 성장을 위해 국내외 잠재력 있는 인재(AI 관련 인재 포함)를 대상으로 혁신적인 교육시스템을 지원하여 창의·혁신적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	10,059																						
			디지털전문·융합인재양성(산업재직자 AI역량강화)	기존산업과 AI융합을 통해 디지털 혁신을 선도할 수 있도록 재직자 AI 역량 강화, 기업의 디지털 전환 추진을 위한 맞춤형 교육·컨설팅 지원 및 디지털 전환 전문가 양성 등	6,780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8	안 제13조(부대시설 설치 등 지원)	×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제정안에 따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구축·운영과 관련한 시설 및 부지에 각종 부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사업자에게 설치·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 시점에서는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자의 수, 부대시설 설치·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규모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지 않아 소요 비용 추계에 한계가 있음
9	안 제14조(금융 지원)	×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제정안에 따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사업자등에게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투자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 시점에서는 지원 대상 사업자등의 수, 융자·투자 등의 내용 및 규모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지 않아 소요 비용 추계에 한계가 있음
10	안 제15조(보조금 지급)	×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제정안에 따라 정부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사업자등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그 관할 구역 안에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를 구축·운영하거나 하려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사업자등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 시점에서는 보조금 지급의 대상 및 기준, 규모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지 않아 소요 비용 추계에 한계가 있음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1	안 제16조(국제협력과 해외 진출의 촉진)	×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제정안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에 관한 국제협력과 관련 기술·서비스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 시점에서는 사업의 내용 및 규모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지 않아 소요 비용 추계에 한계가 있음 － 참고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관련 사업자의 해외진출 지원 등을 위한 다음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단위: 백만원) <table><tr><th>사업명</th><th>사업개요</th><th>2025</th></tr><tr><td>지속가능한 데이터센터 산업 발전 지원 (해외진출 지원)</td><td>지속 가능한 데이터센터 산업 발전을 위해 장비·SW 등 국산화 및 해외 진출 지원</td><td>1,000</td></tr></tabl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업명	사업개요	2025	지속가능한 데이터센터 산업 발전 지원 (해외진출 지원)	지속 가능한 데이터센터 산업 발전을 위해 장비·SW 등 국산화 및 해외 진출 지원	1,000
사업명	사업개요	2025							
지속가능한 데이터센터 산업 발전 지원 (해외진출 지원)	지속 가능한 데이터센터 산업 발전을 위해 장비·SW 등 국산화 및 해외 진출 지원	1,000							
12	안 제17조(지역사회와의 협력)	×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제정안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조속한 구축·확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를 구축·확장하려는 자와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 주민과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 시점에서는 시책의 내용 및 관련 사업 규모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지 않아 소요 비용 추계에 한계가 있음						
13	안 제19조(세제에 관한 특례)	×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제정안에 따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진흥과 기반 조성 등을 위하여 조세감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 시점에서는 조세감면의 대상 및 규모, 방식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지 않아 소요 비용 추계에 한계가 있음						
14	안 제25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정안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업무 위탁에 따른 추가 재정 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 시점에서는 수탁기관에 위탁할 업무의 범위 및 해당 업무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수탁기관의 인력 및 경비 등의 규모를 알 수 없음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제정안 부칙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5조)
 - 제정안에 따른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기본계획 수립 비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기본계획 등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사례를 참조하여 추계함
 - 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공지능 기본계획¹⁾을 수립할 때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확충 및 이용 활성화 등 진흥과 기반 조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인공지능 기본계획의 수립주기를 고려하여 3년마다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가정

[표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기본계획 등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사례

(단위: 백만원)

기본계획명	실시년도	예산
제3차(2022~2026)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수립 연구	2021	200
임무지향적 탄소중립 기술혁신 전략로드맵 수립 연구	2022	300
제6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2022	400
평 균		300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자료 및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 내용 참조

1)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6조(인공지능 기본계획의 수립)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 3년마다 인공지능기술 및 인공지능산업의 진흥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인공지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제7조에 따른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수립·변경 및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추계 결과, 제정안에 따라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할 경우 향후 5년간 총 6억원(연평균 1억 2,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표 3]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2027	2028	2029	2030	2031	합 계	연평균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기본계획 수립	300	-	-	300	-	600	120

주: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재정소요를 추계한 것으로, 실제 기본계획의 수립주기,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 방법 및 금액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증감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본 추계는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결과로, 제정안의 전체적인 추가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재정소요를 추계한 것으로, 실제 기본계획의 수립주기,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 방법 및 금액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증감할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최동완	김신애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최동완	02-6788-3746	dongwaniii@nabo.go.kr

[참고자료] 국내 민간 데이터센터²⁾ 현황(2024년 기준)

(자료: 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

연번	운영주체	센터명	소재지	구축년도
1	BNK금융그룹	BNK금융그룹 IT센터	부산 강서구	2018
2	CJ올리브네트웍스	CJ올리브네트웍스 송도 IDC	인천 연수구	2010
3	DB Inc	DB죽전데이터센터	경기 용인시	2010
4	DGB금융그룹	DGB혁신센터	대구 동구	2018
5	Digital Realty	ICN10	서울 마포구	2022
6	IBK 기업은행	기업은행 IT센터	서울 중구	2001
7	IBK 기업은행	기업은행 IT센터 파이낸스	경기 용인시	2001
8	JB금융	광주은행본점센터	광주 동구	2018
9	KB금융그룹	KB국민은행 임창센터	서울 강서구	1984
10	KB금융그룹	KB국민은행 통합 IT센터	경기 김포시	2019
11	KB금융그룹	KB국민은행 여의도센터	서울 영등포구	1997
12	KINX	케이아이엔엑스 도곡센터	서울 강남구	2001
13	KT Cloud	KT청주(분평)IDC	충북 청주시	2000
14	KT Cloud	KT대전(탄방)IDC	대전 서구	2017
15	KT Cloud	KT목동1IDC	서울 양천구	2008
16	KT Cloud	KT강남IDC	서울 강남구	2007
17	KT Cloud	KT여의도IDC	서울 영등포구	2015
18	KT Cloud	KT천안CDC	충남 천안시	2010
19	KT Cloud	KT분당IDC	경기 성남시	2001
20	KT Cloud	KT목동2IDC	서울 양천구	2016
21	KT Cloud	KT용산IDC	서울 용산구	2021
22	KT Cloud	KT부산송정 GHC	부산 해운대구	2024
23	KT GDH	KT GDH	경남 김해시	2011
24	LG CNS	상암IT센터	서울 마포구	2006
25	LG CNS	부산 글로벌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부산 강서구	2012
26	LG CNS	LG CNS 인천센터	인천 계양구	1992
27	LG CNS	LG CNS 가산센터	서울 금천구	2009
28	LG유플러스	LG U+ 서초1 IDC	서울 서초구	2001
29	LG유플러스	LG U+ 서초2 IDC	서울 서초구	2002
30	LG유플러스	LG U+ 대구IDC센터	대구 중구	2000
31	LG유플러스	LG U+ 가산IDC	서울 금천구	2009
32	LG유플러스	LG U+ 상암IDC	서울 마포구	2013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인공지능데이터센터에 대한 별도의 현황은 관리하고 있지 않으나,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데이터센터가 인공지능 분야 등에 활용될 수 있다는 의견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 시행(2026. 1. 22. 시행예정)된 이후, 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에 대한 현황을 파악할 예정임

연번	운영주체	센터명	소재지	구축년도
33	LG유플러스	LG U+ 논현IDC	서울 강남구	1999
34	LG유플러스	LG U+ 평촌메가센터	경기 안양시	2015
35	Microsoft	MS KOREA	부산 강서구	2020
36	NH 금융그룹	NH통합IT센터	경기 의왕시	2016
37	NH 금융그룹	농협정보기술연구원	경기 안성시	2006
38	NHN 클라우드	NHNC	경기 성남시	2015
39	NICE홀딩스	나이스데이터센터	서울 강동구	2014
40	SK브로드밴드	SK브로드밴드 IDC서초센터	서울 서초구	2000
41	SK브로드밴드	SK브로드밴드 IDC일산센터	경기 고양시	2005
42	SK브로드밴드	SK브로드밴드 IDC분당센터	경기 성남시	2015
43	SK브로드밴드	SK브로드밴드 가산IDC	서울 금천구	2021
44	SK브로드밴드	SK브로드밴드 일산2IDC	경기 고양시	2021
45	SK주) C&C	SK C&C 대덕데이터센터	대전 유성구	2001
46	SK주) C&C	SK C&C 판교데이터센터	경기 성남시	2014
47	SK텔레콤	성수국사	서울 성동구	2008
48	SK텔레콤	대덕국사	대전 서구	2016
49	교보정보통신	교보데이터센터	인천 연수구	2009
50	네이버클라우드	데이터센터 각 춘천	강원 춘천시	2013
51	네이버클라우드	데이터센터 각 세종	세종 집현동	2023
52	농협정보시스템	농협정보시스템 여의도 IDC센터	서울 영등포구	2009
53	다우기술	다우IDC마포센터	서울 마포구	2016
54	대상정보기술	대상그룹 전산센터	서울 중랑구	2019
55	더존비즈온	더존비즈온 D-클라우드센터	강원 춘천시	2011
56	드림마크원(드림라인)	드림마크원 구로IDC	서울 구로구	2019
57	롯데 이노베이트	제1센터 서울센터	서울 금천구	2007
58	롯데 이노베이트	롯데정보통신 용인 정보기술연구소	경기 용인시	1996
59	롯데 이노베이트	마북4센터	경기 용인시	2020
60	삼성SDS	삼성SDS 수원데이터센터	경기 수원시	2007
61	삼성SDS	삼성SDS 구미데이터센터	경북 구미시	1996
62	삼성SDS	삼성SDS 상암데이터센터	서울 마포구	2015
63	삼성SDS	삼성SDS 춘천 데이터센터	강원 춘천시	2019
64	삼성SDS	삼성SDS 동탄 데이터센터	경기 화성시	2023
65	세종네트웍스	분당센터	경기 용인시	2007
66	수협중앙회	데이터센터	서울 송파구	2019
67	신세계아이앤씨	신세계아이앤씨 데이터센터	경기 김포시	2019
68	신한은행데이터센터	신한은행 데이터센터	경기 용인시	2013
69	신한은행재해복구센터	신한은행 재해복구센터	경기 고양시	1999
70	싸이버원	싸이버원 IDC	서울 동작구	2002
71	아시아나IDT	아시아나데이터센터	서울 강서구	2008
72	우리에프아이에스	우리FIS 상암센터	서울 마포구	2009

연번	운영주체	센터명	소재지	구축년도
73	카카오	안산 데이터센터	경기 안산시	2023
74	케이엘넷	IDC센터	서울 강남구	2013
75	코스콤	코스콤 여의도 DC	서울 영등포구	1996
76	코스콤	코스콤 안양센터	경기 안양시	2002
77	포스코DX	포스코 포항데이터센터	경북 포항시	2018
78	포스코DX	포스코 충주데이터센터	충북 충주시	2012
79	포스코DX	포스코 광양데이터센터	전남 광양시	2019
80	하나금융티아이	통합데이터센터	인천 서구	2017
81	한화시스템	한화그룹통합데이터센터	경기 용인시	2010
82	현대오토에버	현대오토에버 파주데이터센터	경기 파주시	2011
83	현대오토에버	현대오토에버 광주데이터센터	광주 광산구	2016
84	현대오토에버	현대오토에버 의왕 데이터센터	경기 의왕시	1992
85	호스트웨이아이디씨	호스트웨이IDC	경기 성남시	2000
86	현대무백스	현대무백스 IDC센터	서울 종로구	2010
87	신테카바이오	신테카바이오	대전 유성구	2023
88	NHN클라우드	국가AI데이터센터	광주 북구	2023
89	KINX	과천데이터센터	경기 과천시	2024
90	LG유플러스	평촌2센터	경기 안양시	2023
91	드림마크원	인천데이터센터	인천 가좌동	2023
92	에퀴닉스	SL2x	경기 고양시	2023